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72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 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는 2020. 10. 초 E 신축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급하여 이 중 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을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20. 10. 13. 피고들과 이 사건 설비공사 중 급수, 급탕, 난방분배기설치 및 배관공사, 계량기 설치 배관공사, 급수, 오배수, 우수, 세탁, 주방배관공사, 지붕층 마감 공사를 원고가 실시하기로 하되, 공사금액은 7,900만 원(근로임금과 부대잡경비)으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D의 지휘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위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되 부대잡경비는 월별 공정률 성과에 따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약정금’이라 한다).

원고의 근로임금은 피고 B가 매달 지급하였으나, 부대잡경비에 대한 약정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D은 2021. 1. 1. 원고의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원고를 공사현장에서 퇴출시켰고, 남은 시공분에 대하여는 피고 D이 직영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에 해당하는 33,094,000원(= 총 공사대금 79,000,000원 - 미시공 금액 8,350,000원 - 기지급 금액 37,5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 중 급수, 급탕, 난방분배기설치 및 배관공사, 계량기 설치 배관공사, 급수, 오배수, 우수, 세탁, 주방배관공사, 지붕층 마감 공사를 공사대금 7,900만 원에 수급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 D의 지휘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위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되 근로임금과 별도로 월별 공정률 성과에 따라 부대잡경비(원고 주장 약정금)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품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 중 원고 주장 부분을 하수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2020. 10.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근로임금과 별도로 월별 공정률 성과에 따라 부대잡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